

제3012호
2023. 7.19.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전화 : 3396-4957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68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3-43호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7
- 공 고
제2023-673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알림 및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8
제2023-674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수시분,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3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7 / FAX.(02)3396-9022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68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12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개정 관련 후속 조치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적극행정 위원회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안 제6조)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 반영
-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안 제7조~제11조)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 반영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구성 등(안 제12조)
- 의견청취, 인사상 우대조치, 운영세칙(안 제13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4407, 팩스 : 02-3396-9013~4, email : kichin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및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국·소장급 공무원
3.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영 제11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민간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를 따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3을 따른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한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43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호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소재지	표지의 재질
	X(m)	Y(m)	X(m)	Y(m)		
10889	451177.97	199434.12	551483.83	199504.94	충무로4가 14	황동
10890	451137.52	199431.32	551443.38	199502.14	충무로4가 12-1	황동
10891	451141.77	199400.33	551447.63	199471.15	충무로4가 149-39	황동
10892	451139.71	199364.88	551445.57	199435.70	충무로4가 5-11	황동
10893	451176.76	199374.54	551482.62	199445.36	충무로4가 12-1	황동
10894	451196.16	199379.57	551502.02	199450.39	인현동1가 132-10	황동
10895	451201.59	199354.29	551507.45	199425.11	인현동1가 139-2	황동
10896	451151.63	199343.09	551457.49	199413.91	충무로3가 34-8	황동
10897	451156.33	199308.43	551462.19	199379.25	충무로3가 37-4	황동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23. 7. 6.			
측량성과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673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알림 및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라「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7제1항에 따라「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고기간: 2023. 7. 17. ~ 2023. 8. 1.(15일간)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알림

1.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독촉고지하오니 가까운 교통안전공자동차검사소에서 빠른시일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받으시기 전 연장신청 필요(연장신청 안할시 과태료부과 대상)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신청할수 있으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1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예신청 조건】
- 교통안전공단 수검안내문 미수령시(연장신청 후 검사요청)
 -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환경과(hty3458@junggu.seoul.kr)에 제출

3.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1.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륜자동차 검사소 안내

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검사소

지역	검사소명	도로명 주소	대표전화	비 고
서울	성동	성동구 가람길 113 (송정동)	02-2244-2556	평 일: 9~18시 토요일: 9~13시 ※ 토요일은 예약전만 검사
	상암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02-309-7033	
	성산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	02-306-5986	
	구로	구로구 경인로 113 (오류동)	02-2037-6000	
	강남	강남구 현릉로 745길 13 (울현동)	02-459-2844	
	노원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하계동)	02-948-4121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지역	검사소명	도로명 주소	대표전화
서울	(주)에이원모터스	성동구 광나루로 192(성수동1가)	02-463-0027
	현대오토서비스	금천구 두산로 3 (독산동)	02-858-8600
	서울모터스(양천)	양천구 목동로1길 42 (신정동)	02-2655-2055
	(주)태성자동차	성동구 이차산로 147(성수동2가)	02-465-4111
	베스트바이크(성동)	성동구 성수이로26길 25(성수동2가)	02-466-5782
	성수현대서비스	성동구 이차산로 171(성수동2가)	02-464-6464
	케이모터스(서울)	중랑구 망우로26길 49(면목동)	070-8959-5828
	합성자동차(주)	강북구 도봉로 113(미아동)	02-903-3900
	한양자동차정비(주)	도봉구 도봉로136다길 32(창동)	02-989-9720
	명신종합오토바이	마포구 민리재로 132-2(공덕동)	02-703-9259
	강서이륜차검사소	강서구 양천로 400-12(가양동)	02-6949-6934
	강서자동차	강서구 양천로 372(가양동)	02-3663-4569
	(주)플라이모터스	강서구 방화대로 22(외발산동)	02-2667-0456
	(주)신동성자동차	강서구 양천로 528(등촌동)	02-3663-4567
	(주)문래자동차검사사업소	영등포구 문래로 31(문래동6가)	02-2679-1141
	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주)	영등포구 선유로 103(양평동1가)	02-2633-8611
	(주)영등포자동차정비검사소	영등포구 문래로 55(문래동6가)	02-2679-1230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검사소, 민간(지정) 검사소에서만 가능
(민간(지정) 검사소 사이트: www.cyberts.kr 또는 www.car365.go.kr 참고)

※ 검사예약, 검사시간, 검사비용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소에 문의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신청서 없음)
- 의무보험영수증(또는 보험증권)
- 검사료 (검사기간 내 미수검 → 과태료 최대 20만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알림 및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자치단체 : 서울시청/서울 중구청						2023.7.17.
No.	이륜차번호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비고
1	서울서초차7997	신*진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20, *****(황학동, 소미골드라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	서울중차6934	사*덕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93(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3	서울강북파3016	윤*욱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8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4	서울성북바0593	주식회사 콜라보프로모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0, 메가몰동 ** *****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불명	1차독촉장
5	서울노원자8850	윤*식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6	서울중차5404	박*복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나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7	서울중타1192	최*빈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4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8	서울동대문가7383	장*도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 (황학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불명	1차독촉장
9	서울성동사0874	TRAN VAN DUONG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2길 ***, **** (쌍림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0	서울성동하2688	김*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우편수취함	1차독촉장
11	서울중타7482	박*욱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7길 **** (황학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2	서울용산카3798	ABD***** UGLI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 155, **, **** (광희동1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3	서울중차9953	정*민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 151, **** (신당동, 신당아르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4	서울서초차7997	신*진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20, ***** (황학동, 소미골드라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15	서울중차3158	김*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16	경기광명파1165	전*혁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가길 33, *****(신당동, 에덴빌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불명	2차독촉장
17	서울중카1299	이*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18	서울중타6569	조*기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407, *****(신당동, 신당파인힐 하나유보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19	서울강북파3016	윤*욱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8길 48,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20	서울성북바0593	주*** **선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0, 메가몰동 *****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불명	2차독촉장
21	서울노원자8850	윤*식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22	서울중차5404	박*복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나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23	서울중타1192	최*빈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4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24	서울동대문가7383	장*도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 (황학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25	서울성동사0874	TRAN *** **ONG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2길 5-9, **** (쌍림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26	경기광명파1165	전*혁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가길 33, *****(신당동, 에덴빌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불명	2차독촉장
27	서울중카1299	이*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명령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674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수시분,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 수시분) 통지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공고기간: 2023. 7. 17. ~ 2023. 8. 1.(15일간)
- 2. 공고대상: 불입참조
- 3. 공고내용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1. 귀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기한내 받았어야하나, 지연검사(사용폐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예정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그 내용을 사전통지하니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정된 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의견제출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아래 추가 감경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처분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감액처리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추가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수시분 부과 알림

1. 귀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 규정을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기한 내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이 60개월(72%)까지 가산되어 최대 7 5%까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만일 이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전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알림

1.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 규정을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았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의거 납부 독촉하니 기한 내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서(사전통지용),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수시분 부과용)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차량	차량번호	차량명
	소유자	신청인과의 관계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하오니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위 신청인 인</p>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통지, 수시분 공고대상자 명단						
▣ 자치단체 : 서울시청/서울 중구청						2023.7.17.
No.	이륜차번호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비고
1	서울강남나4866	김*석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6-35, ****(신당동, 남산도현블랑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2	서울중타5041	이*대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동, 신당동삼삼아파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3	서울마포차9033	전*재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72, ****(인현동2가, 신성아파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4	서울중타2426	송*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35길 ****(만리동1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5	서울성동하4252	임*기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407, ****(신당동, 신당파인힐 하나유보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6	서울중아1004	한*섭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6길 41,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7	서울성동하6483	박*훈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17, ****(황학동, 제이앤비더베스트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8	서울중차6194	권*섭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19-6, ****(필동3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9	서울중차5326	김*훈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가길 8-21, ****(신당동, 현대파레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10	서울중차6290	H** *HE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다길 6-10,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11	서울성동하4111	김*섭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5길 25, ****(황학동, 청계휴먼타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12	서울중카8413	김*균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가길 21-6, ****(장충동1가, 햇님빌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함	과태료(사전통지)
13	서울중타3389	김*균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가길 21-6, ****(장충동1가, 햇님빌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함	과태료(사전통지)
14	서울중타6918	임*나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가길 9, ****(신당동, 회림빌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15	서울중카1747	박*문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2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16	서울용산차9795	최*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9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17	서울중차4708	김*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28-29, ** ****(장충동1가, 태워빌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18	서울중타6382	성*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9길 14, ****(충무로5가, 충무로엘크루메트로시티2차)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19	서울중랑타4681	강*진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6길 17, ****(홍인동,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불명	과태료(사전통지)
20	서울성동하6791	김*중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0,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21	서울중차9210	김*식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22	서울강남파9515	김*진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황학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사전통지)
23	서울강남하3958	김*석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6-35, ****(신당동, 남산도현블랑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수시분)
24	서울성북가7270	박*수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58-8, *****(황학동, 청계리버펠리스B)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수시분)
25	서울중랑타8956	강*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109, ** ****(신당동, 현대아파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수시분)
26	서울강남타5526	김*석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6-35, ****(신당동, 남산도현블랑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수시분)
27	서울강남파2963	김*석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6-35, ****(신당동, 남산도현블랑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수시분)
28	서울중카2488	L* **** *EN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10, *****(중림동, 삼성사이버빌리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불명	과태료(수시분)
29	서울용산차8128	C* ****ONG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라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우편수취함	과태료(납부독촉)
30	서울강남나4866	김*석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6-35, ****(신당동, 남산도현블랑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납부독촉)
31	서울강남하3958	김*석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6-35, ****(신당동, 남산도현블랑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납부독촉)